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080200002]

[www.duria.co.kr]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08. 07. 29]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6. 01. 19]

두리아

정 보 공 개 서

(주)두리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두리아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로201번길 11, 제티-B231호
(농서동,기흥테라타워 현대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대표 전화번호 : 031-269-9289 대표 팩스번호 : 031-605-9299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관리팀 / 031-269-9289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인사말
2.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등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7.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8.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9.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0.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별첨서류

- [별첨1] 가맹본부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별첨2]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품목
- [별첨3] 필수공급품목 및 부수품목
- [별첨4] 메뉴 및 권장가격
- [별첨5] 가맹금예치신청서
- [별첨6]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1. 인사말

“두리아 숯불 바비큐”라는 대표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주)두리아입니다.

“두리아”는 ‘둘이서 함께 하나가 된다’라는 뜻으로 항상 고객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주)두리아의 전직원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닭고기 소비량에서 보듯 닭고기는 웰빙을 대표하는 건강식이고, 두리아는 특히 100% 한강씨엠(하림) 국내산만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양계농가와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리아’는 배달위주의 치킨전문점과는 차별되도록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를 갖추어 매장내 매출을 최대화 하였습니다. 치킨전문점 수준의 창업비용으로 고수익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실제로 매장내 생맥주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강씨엠(하림) 주3회 배송으로 최고 품질의 원료육 공급은 물론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마케팅 지원제도는 프랜차이즈 본사 중 가맹점 신뢰도가 가장 높습니다.

수도권 가맹점이 특별한 광고없이 입소문만으로도 오픈되었습니다. 그런 가맹점의 성공스토리를 수년 간의 가장 큰 보람으로 느끼며, 이제 한 차원 높은 브랜드 인지도 구축을 위해 오늘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수년을 구축한 제반 인프라를 믿어보시면 반드시 신뢰로써 보답하는 두리아가 되겠습니다.

2.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두리아	두리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로201번길 11, 제티-B231호 (농서동,기흥테라타워 현대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8.06.26	2018.07.01	황성숙	031-269-9289	031-605-9299
	법인등록번호	131111-0522861	사업자등록번호	486-86-01148	

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황성숙/ (주)두리아	두리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로201번길 11, 제티-B231호 (농서동,기흥테라타워 현대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황성숙	031-269-9289	031-605-9299

다.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주)두리아	두리아	18.08.06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256번길 125 가양 연립주택 202호	신동악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함	해당없음	-	-	-	-

라.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두리아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두리아	
상 호	두리아 00점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745740000
		서비스표등록번호: 4016950490000

마. 가맹본부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현황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698,312	689,519	8,793	651,952	27,355	15,510
2023년	621,235	725,638	-104,403	712,400	-98,320	-113,196
2024년	570,701	593,177	-22,476	789,188	90,483	81,927

상기 재무현황의 근거는 별첨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입니다.

(2)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위 (1)과 같습니다.

바. 가맹본부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가맹사업관련여부	성 명	직 위	개인별 경력	
			기 간	직위 및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황성숙	대표이사	2023.01.09. ~ 현재	대표
		사내이사	2018.06.~ 2023.01.08.	이사



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 수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0	2

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두리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분류	견본 이미지	출원일 및 등록일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 사용기간)	권리 범위
10 판 43	두리아	출원일 2012.12.26. 등록일 2013.12.02	출원번호 4120120043153 등록번호 4102745860000	신동악	2023.12.02	간판 및 사인물 등의 영업표지로 사용
10 판 29	두리아	출원일 2012.12.26. 등록일 2013.11.28	출원번호 4020120079755 등록번호 4010098400000	신동악	2023.11.28	
10 판 43	Duria	출원일 2012.12.26. 등록일 2013.12.02	출원번호 4120120043152 등록번호 4102745740000	신동악	2023.12.02	
11 판 29 43		출원일 2019.10.24. 등록일 2021.02.19.	출원번호 4020190162810 등록번호 4016950490000	(주)두리아	2031.02.19.	
특 허	구이장치	출원일 2018.08.27. 등록일 2019.04.18.	등록번호 10-1972114	(주)두리아	2038.08.27.	

당사는 당사의 이사이자 상표권 소유자인 '신동악'으로부터 두리아의 상표사용권한을 받았으며, 가맹사업에 사용하는데에 적법한 권한이 있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짜 : 2000년 8월 1일

당사는 2018년 8월 가맹사업을 양수하였으며 상기 시작일은 이전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짜입니다.

나.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경영기간	사무소 소재지
(주)케이지푸드	두리아	길현희	2000.08~2005.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260-2번지
(주)두리아식품	두리아	길현희	2005.1~2006.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목동
(주)케이지푸드	두리아	길현희	2006.12~2012.0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476-1]
(주)두리아	두리아	길현희	2012.06~2014.1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56 (파장동)
(주)두리아	두리아	서성희	2014.10~ 2016.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56, 지하1층(파장동)
(주)두리아	두리아	김영식	2016.01.~ 2018.08.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56, 지하1층(파장동)
(주)두리아	두리아	신동악	2018.08.06.~ 2020.09.2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20층 비-2003호(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2차)
(주)두리아	두리아	신동악	2020.09.23. ~ 2023.01.0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로201번길 11, 티-B231호 (농서동,기흥테라타워 현대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주)두리아	두리아	황성숙	2023.01.09. ~ 현재	

다. 당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
두리아	치킨	치킨

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25	25	-	24	24	-	23	23	-
서울	4	4	-	3	3	-	3	3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1	1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8	18	-	18	18	-	17	17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1	1	-	1	1	-	1	1	-
전북	-	-	-	1	1	-	1	1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1	1	-	1	1	-	1	1	-

마.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

사업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	27	2	-	4		25
2023	25	1	-	2	2	24
2024	24	-	1	-	-	23

바.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없음

사.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전년도(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VAT미포함)

지역	2024년말 가맹점수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매출액	평당	상한	평당	하한	평당	
전체	23	67,417	3,713	150,377	13,784	5,285	264	23곳 산정
서울	3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17	81,790	4,538	150,377	13,784	17,022	1,146	17곳 산정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전북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상기 매출액은 2024년 12월 말 당사의 23개 가맹점의 물품 공급액을 아래 산식으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추정 기재하였습니다.

$\text{매출액} = \text{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 \div 45\%$
--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8%~22%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산정은 단지 당사가 추정하는 매출액이며 각 점포에 따라 다양한 경영환경에 따라서 실제 매출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사입 여부와 정도,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아.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사업연도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년	23곳	4620일

상기 평균 영업기간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의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부 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한 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수로 나눈 기간입니다.

자.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해당없음

차.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천원/기준:2024년)

구 분	수단별 항목	비 용		총 액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비	 (비공개)		0	
판촉비	 (비공개)	0	0	0

* 근거는 별첨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예치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와 소재지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
국민은행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7-14	031-743-3384~7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 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로드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사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타.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나.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의 부담

귀하가 두리아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1) 최초 가맹금

①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원/VAT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5,500,000	계약체결시	영업개시 전 계약 해지시	· OPEN 전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 (노하우 및 인력·정보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 OPEN 후 :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개점 전 교육비	2,200,000	계약체결시	교육 개시 전	· 교육 개시 전 : 전액 반환 · 교육 개시 후 :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②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원/VAT없음)

구분	내역	금액 (단위:원)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2,000,000 (VAT 해당없음)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미납 채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2)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VAT포함)

구분	금액
합계	9,700,000
가맹비	5,500,000
교육비	2,200,000
계약이행보증금	2,000,000(VAT해당없음)

3)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원/VAT포함/66㎡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M ²	지급기한	반환사유	비고
총계	-	53,790,000	2,689,000	-		-
인테리어	협력업체	29,040,000	1,452,000	3회 분할 납부 착수금-공사 중도금-공사 잔금-공사 완 료	공사 발주 전 계약해지	가맹점사업 자가 자체 시공시 평당 이십만원의 감리비를 부담
간판	협력업체	4,400,000	-	간판 시공 완료 후	발주전 계약해지	
바비큐 구이기	가맹본부	5,500,000	-	영업 전	발주 전 계약해지	두리아 전용 구이기 제작
주방집기 및 비품	협력업체	9,900,000	495,000	영업 전	발주 전 계약해지	튀김기등 일체
테이블	협력업체	4,950,000	-	영업 전	발주 전 계약해지	기본 9조

홍보 이벤트	가맹본부	3,300,000	-	영업 개시 전	발주 전 계약해지	이벤트 2일, 홍보물 6종
초도상품	가맹본부	별도금액		영업 개시 전 (초도 물품 입고 즉시)	발주 전 계약해지	
그 밖에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POS,TV, 전기증설, 가스공사, 냉난방기, 각종 인허가, 정화조 및 외부 상하수도 공사, 화장실 공사, 실내 공조, 철거비용, 외부 익스테리어, 테라스					

[별도공사비용 : 외부 전면 인테리어, 철거, 전기증설, 냉난방시설, 화장실, 음향시설, CCTV 설치, 소방공사, 외부환풍, 조경공사, 가스공사, 주방설비(후드닥터)등은 별도 비용입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점포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의 3.3m²당 금액의 산정은 기준 면적을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나눈 금액에 불과하며, 이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는 다르며, 품목에 따라 면적과는 성질상 비례하지 않아서 실제 면적과는 비용이 같거나 적은 등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당사의 협력업체가 아닌 곳에서 시공하는 경우 평(3.3m²)당 금이십만원 (₩200,000)(VAT별도)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가맹본부가 정한 기준과 가맹희망자의 자본에 맞춰 점포개발을 진행 적합한 점포라고 판단시 입지로 선정

※ 가맹본부는 점포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내립니다.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입지선정에 있어 가맹본부에 의뢰할 시 별도의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여 가맹본부가 점포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비고
가맹점사업자	제한없음	피성년후견인 아닐 것	· 가맹점사업자와 종업원은 용모 단정하고 성실 근면한 자이어야 합니다. · 가맹점 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의 점포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종업원	제한없음	만19세 이상.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요함	

6)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두리아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내역은 첨부한 카달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영업 중의 부담


1)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자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광고료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측이 배분하여 분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광고 실시 전	광고 및 판촉을 시행할 경우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광고 시행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전	교육 개시 전	교육 개시 후에는 소멸성이므로 반환하지 않음
로열티	가맹본부	월 매출액 2.2%	매월 말일	반환불가	후불제로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반환하지 않음
점포환경개선 비용	계약자	가맹본부 분담 부분 제외 나머지 모두	개별청구	발주 전 소요 비용 공제 후 반환	
지연	가맹	연 20%	개별 청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이자	본부			날까지여서 반환 안됨
----	----	--	--	-------------

2) 구입요구품목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2024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회계처리 재고관리	상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에 관하여 감독	가맹본부의 요청시	문의 (031-269-9289)

다.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하기 위해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권을 이전받는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금액	비고
교육비	2,200,000 (VAT포함)	가맹계약의 잔여 계약기간을 부여함. 다만, 위 금액은 현재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며, 양수도 당시의 신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교육비를 기준으로 하므로 변동가능함.
계약이행보증금	2,000,000 (VAT해당없음)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미납 채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양수인이 신규계약을 원할 경우 신규계약에 준하는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7'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노하우 사용 및 영업을 중단하고, 가맹본부로부터 부여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간판 시안과 가맹본부만의 고유 외장 인테리어 등의 영업표지를 영업장 기타 영업설비로부터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⑤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된 원·부재료 등의 중에서 완전물을 가맹본부에 반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공급가격

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의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 물품구입 및 임차

1)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유할 경우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 [별첨 3] 참조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 상·하한

☞ [별첨 3] 참조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해당 없음

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주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산정기준 및 금액

1)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 해당 없음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 해당 없음

다. 상품 또는 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별첨4]	당사에서 지정한 메뉴를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가맹점 및 상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메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사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품공급 중단 또는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경쟁업체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 제한내용 :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위반시 책임 :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

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판매가격의 결정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조언 내지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권장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권장가격>은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권장(조언)가이며, 가맹점이 판매촉진 등의 필요로 <권장가격>과 다르게 판매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빠짐없이 가맹본부에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 후에 가격을 결정합니다.

메뉴별 권장가격은 [별첨4]과 같습니다.

라.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바베큐통닭전문점	두리아	-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당해 브랜드와 상기 기재된 범위와 같은 동일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상기와 같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설정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3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상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기와 같습니다.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있어서 배타적이고 독점적 영업을 실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영업지역의 개발이나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영업지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고,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나 수익에 별다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당사는 직권으로 고객의 편리를 위하여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노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두리아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

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마.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년	100%	-	-	-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년	100%	-

당사는 가맹점 외 온/오프라인 플랫폼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가맹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 재계약 또는 갱신시 계약기간 :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

2) 계약 갱신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서 제6조 제2항).

-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 ④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점포의 점유권을 갱신되는 기간 중에 계속 보유를 하지 못할 경우

- 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후, 관계당국의 권고나 영업방침의 변경으로 본 계약 내용의 일부를 수정한 가맹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그 수정된 가맹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계약서 제6조 제2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양 당사자에게 계약 해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D-90
② 2)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계약서 제34조 각항)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의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2회 이상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상의 변경 사항(명의변경, 점포 규모 및 소재지 변경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보충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로열티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업종을 영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영업방침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공급상품을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상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②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③ 가맹점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가맹본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계약서 제42조 제2항)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 제정·개정에 따른 경우 : 사전 통보 및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 양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수정 : 서면합의로 결정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완료	- 수정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2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발생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내용 적용

사.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단,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
- ② 가맹본부가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르는 교육비 (양수도 당시의 교육비와 동일한 금액),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양도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신규에 준하여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의 양수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④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구분	가능 여부 (조건)	이전 범위	절차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 ·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비 금삼백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리경영	본부 승인시 가능	대리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으로는 대행 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없으나,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하에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경영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두리아와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바베큐통닭전문점경영업 및 동일업종의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허가 여부 통지→완료

5)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의 제한 내용 : 가맹점의 특수성 및 상권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수의 제한 내용 : 가맹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주 6일 이상, 월 26일 이상 개점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특수성 및 상권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영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하도록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용하도록 권장하는 종업원 수는 3명(30평 기준)이며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하는지 여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에 의합니다.

7)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감독하는지와 관리·감독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상품 취급 여부, 제품의 보관상태, 조리 및 위생상태, 서비스 상태,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②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점포 감독은 본사에서 미리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결과를 쌍방이 서명하여 가맹본부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아.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두리아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광고 → 사후결과 공고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 전체 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통일적인 홍보물 등의 디자인, 시안 등의 제작비용 등은 당사가 부담함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 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팸플렛·전단 등의 홍보물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판촉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광고 → 사후결과 공고	판촉행사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기타 개별 행사	개별행사 및 광고	-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단독으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경우 광고 및 판촉활동의 자료, 문구,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한 후 가맹본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차.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	계약 조항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을”의 사정에 의하여 “을”이 계약을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1개월 전에 “갑”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4조
⑤“을”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갑”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경우 무상표 사용에 해당되며, 무단 상표 사용기간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
①“을”이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제19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
②“을”은 “갑”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

7.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로 귀하의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그때까지의 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VAT별도/99㎡ 기준)

구분	내용	기간	비용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담당자 배정	즉시	없음
가맹사업 설명 및 상담	담당자 상담 투자내역 공개,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즉시	없음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의사결정, 시장조사 점포 입지 분석 및 확정 점포 실측	1개월 이내 (필요시 실시)	50만원 이내
가맹승인	가맹계약서 작성 및 가맹금 예치 인테리어 등 투자계약	점포 확정 후 5일 이내	가맹비 5,500,000 개점전교육비 2,200,000
인테리어 공사	도면미팅 실내외공사 주방잡기 등 기기 입고	25일	5-가.-3)참조
개점 전 교육	조리교육, 서비스교육	8일 (공사기간에 병행)	없음
매장 가오픈	집기 및 인테리어 실사 매장 영업 리허설	1일	없음
오픈	가맹점 영업개시 오픈 이벤트(2일) 영업지원(2일)	즉시	없음

주의)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개인 사정, 교육이수 정도, 가맹점포의 여건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점포개발은 미보유시인 경우에만 실시되며 상권분석 또한 필요시 실시합니다.

나. 가맹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 1)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해결 노력을 합니다.
- 2) 양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02-3445-9898, 홈페이지 : <http://www.kofair.or.kr>)

3) 관할법원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 및 점포소재지의 법원으로 합니다.

8.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가.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점포환경개선은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가맹본부 /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점포환경개선을 진행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지급신청이 없더라도 가맹본부 부담액을 점포 환경개선이 끝난 날 부터 9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비용 부담 제외 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점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시에 가맹본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지원항목,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 경영활동 자문

당사의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은 통상적인 가맹본부의 가맹점관리, 교육, 통제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자문의 여부, 내용,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경영 상의 지원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교육·훈련 종류	이수 강제여부	최소시간	비 용	피교육자	불참시 불이익
개점 전 교육	강제	9일	2,200,000원(VAT포함)	가맹점주 포함 2인	오픈 불가 개점 지연 계약 해지
수시교육 (신메뉴 도입등)	강제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가맹점주, 종업원	점포평가 반영 재계약시 적용
재교육 (부진점등)	강제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가맹점주, 종업원	점포평가 반영 재계약시 적용
특별 교육	자율				

※ 개점 전 교육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10.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가맹점명	소재지
1	-	-	-
2	-	-	-
3	-	-	-
4	-	-	-
5	-	-	-

☞ 2024년 12월 기준 직영점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	-

☞ 2024년 12월 기준 직영점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2024년 12월 기준 직영점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별첨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품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3

< 필수공급 품목 - 거래상대방 : 가맹본부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주요품목 별 공급가격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4

<메뉴 및 권장가격>

[2021.04. 기준]

메뉴	가격	메뉴	가격
마늘간장치킨	18,000	땡초바베큐	19,000
후라이드치킨	17,000	순살후라이드치킨	18,000
날개후라이드	19,000	양념치킨	18,000
순살양념치킨	19,000	날개양념치킨	19,000
마늘간장치킨	18,000	순살간장치킨	19,000
날개마늘간장치킨	19,000	허니간장치킨	18,000
순살허니간장치킨	19,000	날개허니간장치킨	19,000
땡초치킨	18,000	순살땡초치킨	19,000
날개땡초치킨	19,000	맵쫄치킨	18,000
순살맵쫄치킨	19,000	날개맵쫄치킨	19,000
간풍치킨	18,000	순살간풍치킨	19,000
날개간풍치킨	19,000	크림어니언치킨	18,000
크림어니언순살	19,000	파닭치킨	18,000
순살파닭치킨	19,000	한식치킨	18,000
양식치킨	18,000	소금바베큐	17,000
한식바베큐	18,000	양식바베큐	18,000
땡초바베큐	19,000	순살땡초바베큐	19,000
맵쫄바베큐	19,000	순살맵쫄바베큐	19,000
간풍바베큐	19,000	순살간풍바베큐	19,000
마늘간장바베큐	18,000	국물떡볶이	15,000
통집후라이드	13,000	무뼈닭발	15,000
프리미엄치즈볼(10개)	9,000	프리미엄치즈볼(5개)	4,500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본 가맹금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의 예치일 부터 7일 이내에 이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첨 6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